

이 사 회 의 사 록

1. 일시 : 2021년 03월 31일 (수) 11:00

장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1201호

(복)세영재단 회의실

2. 이사 및 감사 총수 : 이사 7명, 감사 2명

3. 참석이사 : 대표이사 장홍선, 이사 이해관, 이사 이제광,

사외이사 김재호.

대표이사 장홍선은 의장석에 착석하고 금일 이사회가 정관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의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다.

제1호 의안 :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사업계획수정안) 승인의 건

대표이사는 당 재단의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사업계획수정안)을 승인 처리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내에 의견을 구한 논의 끝에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가결하다. (첨부 #1 :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사업계획수정안))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개정의 건

대표이사는 당재단의 정관 제4조의 사업의 종류중 장기간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삭제하고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문구 수정하여 지원사업을 원할히 하며, 정관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과

사회복지법인 표준정관에 따른 일부 용어등을 정비하는 안을 설명하고 장내에 의견을 구한바 논의 끝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첨부 #2 : 정관변경안)

제3호 의안 : 외부회계감사 실시의 건

대표이사는 당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으로 그동안 가산세 납부로 대체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지정하여 감사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구한바 논의 끝에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을 대표이사가 지정하여 시행할것을 주문하고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대표이사 장홍선은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됨을 선언하고 오전 12시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사항은 정관 제30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였다.

2021년 03월 31일

사회복지법인 세영재단

의장/대표이사

장 홍 선

이 사 이 해 관

이 사 이 제 광

사외 이사 김 재 호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법인회계, 시설회계 합산분)

제 5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수익사업	법인회계	시설회계	계
			(애지어린이집)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5,968,780,233	251,106,262	68,623,146	6,288,509,641
(1) 당 좌 자 산	5,968,780,233	251,106,262	68,623,146	6,288,509,641
제 예 금	72,631,607	100,514,938	65,051,125	238,197,670
정 기 예 금		149,958,500		149,958,500
유 가 증 권	5,888,596,676			5,888,596,676
미 수 수 익		234,674		234,674
미 수 금	4,950,000		3,572,021	8,522,021
대 손 총 당 금	(49,500)			(49,500)
선 납 제 세	2,651,450	398,150		3,049,600
II. 비 유 동 자 산	7,080,135,596	1,380,651,509	3,554,219	8,464,341,324
(1) 투 자 자 산	3,579,000	989,000		4,568,000
투자 유 가 증 권	1,000			1,000
예 치 금	3,578,000	989,000		4,567,000
(2) 유 형 자 산	7,076,556,596	1,379,660,509	3,554,219	8,459,771,324
토 지	4,030,005,134	841,001,164		4,871,006,298
건 물	4,246,719,523	1,018,101,476		5,264,820,999
감가 상각 누계액	(1,200,168,061)	(512,495,387)		(1,712,663,448)
차 량 운 반 구		34,787,637		34,787,637
감가 상각 누계액		(1,739,381)		(1,739,381)
집 기 비 품		8,301,700	47,853,800	56,155,500
감가 상각 누계액		(8,299,700)	(44,299,581)	(52,599,281)
시 설 장 치		6,988,300		6,988,300
감가 상각 누계액		(6,985,300)		(6,985,300)
(2) 무 형 자 산		2,000		2,000
소 프 트 웨 어		2,000		2,000
자 산 총 계	13,048,915,829	1,631,757,771	72,177,365	14,752,850,965
부 채				
I. 유 동 부 채	10,147,070	4,915,729	3,948,890	19,011,689
미 지 급 금			74,250	74,250
예 수 금		4,733,910	3,874,640	8,608,550
부 가 세 예수금	6,847,070	181,819		7,028,889
선 수 금	3,300,000			3,300,000
II. 비 유 동 부 채	370,000,000	152,952,574		522,952,574
임 대 보 증 금	370,000,000			370,000,000
퇴직급여충당금부채		86,483,425		86,483,4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6,469,149		66,469,149
부 채 총 계	380,147,070	157,868,303	3,948,890	541,964,263
자 본				
I. 자 본 금	13,001,925,657	2,009,061,140		15,010,986,797
기 본 순 자 산	13,001,925,657	2,009,061,140		15,010,986,797
II. 자 본 조 정	63,104,041			63,104,041
유가증권평가이익	63,104,041			63,104,041
III. 이 익 잉 여 금	(396,260,939)	(535,171,672)	68,228,475	(863,204,136)
회계변경의누적효과	(952,704,729)	(511,458,682)		(1,464,163,411)
전기오류수정이익	80,483,425			80,483,425
전기오류수정손실		(80,483,425)		(80,483,425)
미처분이익잉여금	475,960,365	56,770,435	68,228,475	600,959,275
(당 기 순 손 실)				
당기:111,111,701원				
자 본 총 계	12,668,768,759	1,473,889,468	68,228,475	14,210,886,702
부 채 와 자 본 총계	13,048,915,829	1,631,757,771	72,177,365	14,752,850,965

운영성과표 (수익사업, 법인회계, 시설회계 합산분)

제 5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수익사업		법인회계		시설회계	
			(세영재단)		(애지아린이집)	
	금 액		금 액		금 액	
I. 매 출 액		328,603,000		100,000,000		631,531,201
사업수입(보육료)					284,008,603	
임대료수입	328,603,000		100,000,000			
기부금수입						
보조금					322,725,410	
잡수입					3,597,365	
기타필요경비					7,093,442	
특별활동비수입					3,381,265	
적립금처분수입					756,123	
전입금					9,889,000	
과년도수입					79,993	
II. 매 출 원 가						
III. 매 출 총 이 익		328,603,000		100,000,000		631,531,201
IV. 판매비와관리비		213,279,718		242,216,718		664,879,190
급여	30,612,000		75,500,000		433,841,900	
퇴직급여충당금전입			6,000,000			
복리후생비	600,000		4,522,970		8,005,300	
여비교통비			2,160,000		60,200	
접대비			8,039,100			
통신비	3,130		1,234,310			
수도광열비	178,680		430,930			
세금과공과	26,944,737		4,399,230			
감가상각비	106,167,987		27,191,917		2,985,597	
수선비	3,777,870		50,000			
보험료	3,292,641		3,592,885			
차량유지비			6,025,911			
운반비			45,000			
도서인쇄비	56,000		689,200			
회의비	67,000		1,051,200		307,900	
사무용품비			374,300			
소모품비			518,000			
지급수수료	13,813,000		6,560,524			
대손상각비	49,500					
건물관리비	27,717,173		6,654,730			
업무추진비					1,534,800	
퇴직금및퇴직직립금			87,176,511		33,610,240	
수용비및수수료					29,552,703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3,432,350	
교재,교구구입비					25,416,665	
시설장비유지비					4,606,980	
급식,간식재료비					45,493,239	
법정부담금					41,023,626	
행사비					4,187,965	
자산취득비					9,597,470	
시설비					454,000	
특별활동비지출					3,950,000	
기타필요경비지출					6,908,720	
보호자반환금					180,100	
교직원연수,연구비					270,565	
V. 영 업 이 익		115,323,282		(142,216,718)		(33,347,989)
VI. 영 업 외 수 익		143,617,104		301,206,716		70,429,228
이자수익	143,550,354		2,422,234		38,424	
유형자산처분이익			1,864,446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96,920,036		70,390,804	
대손충당금환입	46,750					
잡이익	20,000					
VII. 영 업 외 비 용		370,052,087		90,487,888		38,424
기부금			86,889,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369,935,017		2,592,653		38,424	
잡손실	117,070		1,006,235			
IX. 법인세 차감전 이익		(111,111,701)		68,502,110		37,042,815
IX. 법 인 세 등						
X. 당 기 순 이 익		(111,111,701)		68,502,110		37,042,815

계		과 목
금 액		
	1,060,134,201	I. 매 출 액
284,008,603		사 업 수입(보육료)
328,603,000		임 대 료 수 입
100,000,000		기 부 금 수 입
322,725,410		보 조 금
3,597,365		잡 수 입
7,093,442		기 타 필 요 경 비
3,381,265		특 별 활 동 비수입
756,123		적립금 처 분 수 입
9,889,000		전 입 금
79,993		과 년 도 수 입
0		
	1,060,134,201	II. 매 출 원 가
	1,120,375,626	III. 매 출 총 이 익
539,953,900		IV. 판매비 와 관리비
6,000,000		금 여
13,128,270		퇴직금여충당금전입
2,220,200		복 리 후 생 비
8,039,100		여 비 교 통 비
1,237,440		접 대 비
609,610		통 신 비
31,343,967		수 도 광 열 비
136,345,501		세 금 과 공 과
3,827,870		감 가 상 각 비
6,885,526		수 선 비
6,025,911		보 험 료
45,000		차 량 유 지 비
745,200		운 반 비
1,426,100		도 서 인 쇄 비
374,300		회 의 비
518,000		사 무 용 품 비
20,373,524		소 모 품 비
49,500		지 급 수 수 료
34,371,903		대 손 상 각 비
1,534,800		건 물 관 리 비
120,786,751		업 무 추 진 비
29,552,703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3,432,350		수 용 비 및 수수료
25,416,665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4,606,980		교 재 교 구 비
45,493,239		시 설 장 비 유지비
41,023,626		급 식 . 간식재료비
4,187,965		법 정 부 담 금
9,597,470		행 사 비
454,000		자 산 취 득 비
3,950,000		시 설 비
6,908,720		특 별 활 동 비지출
180,100		기타 필요 경비지출
270,565		보호자 반환금
	(60,241,425)	교직원 연수.연구비
	515,253,048	V. 영 업 이 익
146,011,012		VI. 영 업 외 수 익
1,864,446		이 자 수 익
367,310,840		유형 자산 처분이익
46,7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000		대 손 충당금 환입
	460,578,399	잡 이 익
86,889,000		VII. 영 업 외 비 용
372,566,094		기 부 금
1,123,30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5,566,776)	잡 손 실
		IX. 법인세 차감전 이익
		IX. 법 인 세 등
	(5,566,776)	X. 당 기 순 이 익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56(당)기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제 55(전)기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2021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2020년 03월 31일

회사명 :사회복지법인세영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기		제 55(전)기	
	금 액		금 액	
I. 미 처 리 결 손 금		863,204,136		857,637,360
1. 전 기 이 월 미처리결손금	857,637,360		755,738,526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효과	0		-4,132,054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80,483,425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80,483,425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손 실	5,566,776		97,766,780	
II. 결 손 금 처 리 액		0		0
1.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0		0	
2. 기 타 법 정 적립금이입액	0		0	
3.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0		0	
4. 재 평 가 적 립 금 이 입 액	0		0	
5. 자 본 준 비 금 이 입 액	0		0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0		0
1. 이 익 준 비 금	0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0		0	
가. 현 금 배 당	0		0	
나. 주 식 배 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0	
IV. 차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863,204,136		857,637,360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세영재단 사업계획서 수정안

사업개요

1. 목적

이 법인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2호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 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장학사업운영

기타 위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한 임대사업 및 부대사업

3. 법인현황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 1201호(브라운스튼천호, 성내동)

연락처 : 02-471-8100

임원현황 : 이사 7인(외부추천이사 2인 포함), 감사 2인

4. 세부사업 내용

1) 지원사업(사업분류: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대상	2021계획	2021년수정안	증감	사업내용
1. 강동구청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0	10,000	-	강동구관내 불우이웃돕기
2. 무지개 장학재단	10,000	10,000	-	장애자부모를둔학생 또는 장애학생
3. 성요셉동산양로원	13,000	13,000	-	정부 비지원 노인복지시설 월동비지원
4. 실로암안과병원	10,000	10,000	-	저소득층 개안수술비용 지원
5.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0,000	10,000	-	청소년 글로벌리더쉽 교육비 지원
6. 신촌세브란스병원	10,000	10,000	-	저소득층 긴급의료 지원
7. 주안원로원	15,000	15,000	-	저소득 은퇴 목회자 지원
8. 울목복지관	2,500	2,500	-	재가노인 월동지원비(안양지역)
9. 성환노인복지센터	2,500	2,500	-	재가노인 월동지원비(춘천지역)
10. 불내노인복지센터	2,500	2,500	-	재가노인 월동지원비(충남성환지역)
11. 강동구청신보건센터외	3,000	3,000	-	강동구 관내 부모교육 지원외
12. 감리교신학대 장학금지원		20,340	20,340	매영숙장로 기념 장학금 지원 3명
13. 기타				
계	88,500	108,840	20,340	

2) 시설(애지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원항목	2020년	2021년	비 고
1. 어린이집 종사자 추석 및 연말 특별격려금	28,502	32,000	
2. 영양사 인건비 지원	30,699	33,000	
3. 시설개보수 지원, 해외연수, 송년회 행사지원	8,000	8,000	
4. 기타 (코로나 방역관련 지원)	3,000	3,000	
계	70,201	76,000	

사회복지법인 세영재단 정관 변경(案)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세영재단	대표자 성명 장 홍 선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 1201호	전화번호 : 02-471-8100
	(브리운스톤천호, 성내동)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사유

제4조 사업의 종류

1.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2.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3. 장학사업운영

4. 기타 위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한 임대사업 및 부대사업

제8조 회계의 구분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2. 장학사업운영

3.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회계의 구분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정관에 따라 **특별회계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수정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u>3월31일</u>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어 변경 및 일정삽입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u>이 사 7인</u>(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u>이 사 8인</u>(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임원 유고시 최저 정수 유지를 위한 <u>정수 증원</u>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u>제2항</u>의 규정--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u>제3항</u>의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제21조 임원의 직무	제21조 임원의 직무 ④ <u>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	표준정관에 따라 ④항 신설 기존 ④항을 ⑤항으로 변경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26조 의결사항 4. 임원 <u>선출</u>에 관한 사항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26조 의결사항 4. 임원 <u>임.면</u>에 관한 사항	표준정관에 따라 용어 변경

제27조 이사회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u>1월중에</u>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u>3분의 1이상</u>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u>3분의 1이상</u>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u>3월중에</u>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u>재적이사의 과반수</u>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u>과반수</u>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단의 사정상 정기이사회는 결산 <u>완료 후 3월</u> 이내에 개최하며 표준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제28조 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②이사회 의결결정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②이사회 의결결정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표준정관에 따른 대리인 용어 추가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③ 회의록은 <u>회의일부</u>부터 <u>10일</u>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u>3개월간</u>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 도 비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 게재문항 신설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가. 부동산 임대사업 및 부대사업 나. <u>창고 및 주차장업</u>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부동산 임대사업 및 부대사업	<u>창고 및 주차장 사업은 폐지하였음.</u>
제34조 직원	제34조 상근직원	표준정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인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 직원을 둔다. ② 상근직원의 임용.복무.보수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는 다른 <u>④항 신설</u>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을 법률로 용어 변경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이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인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40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41조 규정의 제.개정 ① 이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중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u>표준정관 개정</u>에 따라 40조, 41조 분리 신설